

제 373 호

1973.5.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시보

차례

이영호(李榮浩) 기자회견

기자회견 실무자 및 주제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규칙

제 1304 호 : 서울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시 행규칙 3

◎ 훈령

제 367 호 : 서울특별시 시세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12

◎ 고지

○ 제 79 호 :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4

◎ 사령 1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5월 28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04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
설치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용인원) ①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수용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립동대문근로자회관

360 명

2. 서울특별시립남대문근로자회관

192 명

3. 서울특별시립영등포근로자회관

192 명

② 천장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이

를 수용할수 없다. 다만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려 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이용자와자격) 회관을 이용할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1. 시내에서 자유업에 종사하는 무의무탁한 영세근로자

2. 만 18세이상 65세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원이 확실하고 사상이 전철한자

3.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자

제 4 조 (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회관을 이용할 수 없다.

1. 근로능력이 없는 하약자, 질병자 및 가족을 동반한자

2.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관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3. 퇴관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제 5 조 (회관의 이용신청등) ① 회관의 이용을 원하는자는 별지제 1호 서식에 의한 속박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2) 관장은 전항의 숙박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제 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이용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숙박자카드등비치)</p> <p>(3) 전항에 의하여 회관의 이용이 결정된자에 대하여는 별지제 3호서식에 의한 숙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4) 회관 이용자가 퇴관할 때에는 반드시 숙박증을 관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제 6조(퇴관조치)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채손 또는 멸실한자 2. 숙박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자를 동숙 시킨자 3. 회관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자 4. 회관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p>가하는 행위를 하는자</p> <p>5. 기타관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자</p> <p>(1)회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제 4호서식에 의한 숙박자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2)전항의 숙박자카드를 숙박중인자와 퇴관자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퇴관한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3)관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개기한 서류외에도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 8조(사용료 및 수수료수납) ① 관장은 소관 시수입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조정결의를 필한후 수입금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p> <p>② 관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분의 수입징수보고서에 시금고가 발행하는</p>
---	--

수입금 월중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p>제 9 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 빙서류를 구비하여 관장에게 신청하 어야 한다.</p> <p>(2) 관장은 전항의 감면액이 1,000 원 이 상인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 13 조 (소지물의 제한) ① 회관을 이 용하는 자는 그 이용기간 중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질물 및 폭발물 기타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 체의 물품을 소지 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한도내에서 이용자의 물품을 수탁 보관할 수 있다.</p>
<p>제 10 조 (사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 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려하지 아 니하다.</p>	
<p>제 11 조 (사용료의 추징) 시장은 부 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감면을 받 은자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은 사용 료를 추징하여야 한다.</p>	부 칙
<p>제 12 조 (손해배상) ① 관장은 제 5조 제 1호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p>	<p>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p> <p>2.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제 970 호 (70.5.20)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별지 제 1 호 서식

속 박 원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월 수 입 액 :

위 본인은 귀회관에 기숙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귀하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속박원을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설 및 구조의 무단변경 손상 및 멸실 행위를 하지 아니함.
2. 속박증의 전매 또는 양여 행위를 하지 아니함.
3. 회관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 행위를 하지 아니함.
4. 회관내에서 일체의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지 아니함.
5. 기숙증 정부 및 행정기관에 물이익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6. 기숙증 정부 및 행정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7. 기숙증 회관 측이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
8. 기숙증 관장의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 하겠음.
9.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기숙증 회관 측이나 또는 동숙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 하겠음.

1973년 월 일
위 원 일 ⑧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장 귀하

제 373 호

시 보

1973.5.29 17-7

별지 제 2 호서식

접수 대장

27 cm x 19.3 cm

17-8 제 373 호

시 보

1973.5.29

번지 제 3 호서식

10cm × 10cm

No. 속 박 증

사
진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생
 합숙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앞

상기 자는 당회관합숙자임을 증명함.

서기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장

면

월일								
검인								
월일								
검인								
월일								
검인								
월일								
검인								

뒷

면

별지 제 4 호서식

No.

(전면)

사 진	숙박자카드		입소일자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퇴소일자	년 월 일
본적		주소		
직업	취역장소(광장명)	전화		주소
	대표자성명	월급이액		취미
	보직등위	자격면허		특기
가족관계	부양가족수	결혼여부	기혼, 이혼, 미혼, 사별	
전속식사항	자취(비용)	원	간속(비용)	원
병역관계	역종	계급	군별	병과
	예비군중대명		예비군교육상황	군번
정당관계	가입정당명		가입년월일	직위
형벌관계	죄명		부역기간	비고
자활계획	상경년월일		상경동기	합숙기간
신원조회 및 전장진단	신원조회		8. 15 당시	건강진단
	결과		거주지	결과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 17cm X 13cm				

제 373 호

서

보

1973.5.29

17-9

17-10 제 373 호

시 보

1973.5.29

별지 제 4 호서식

(후면)

종아하는 부식 순위		거 축				생활기록		
국	부식	월일	예금액	지급액	차감잔액	월일	합숙기간	기타사항
1. 콩나물()	1. 김치()							
	2. 채나불()							
2. 시금치()	3. 마늘()							
	4. 양파()							
3. 배추()	5. 마늘쫑()							
	6. 시금치()							
4. 무()	7. 부추()							
	8. 미나리()							
5. 감자()	9. 산나물()							
	10. 콩장()							
6. 꿩치()	11. 멸치()							
	12. 고추장()							
7. 오징어()	13. 상추()							
	14. 호박()							
8. 둥태()	15. 오이()							
	16. 고추()							
9. 병국(미역)()	17. 외지무침()							
	18. 단무지()							
10. 내장국()	19. 짱아지()							
	20. 고추저림()							
11. 김치국()	21. 각두기()							
	22. 갓김치()							
12. 두부국()	23. 아지()							
	24. 도라지()							
	25. 두부()							
	26. 도로묵()							
	27. 무말랭이()							

17cm X 13cm

제 373 호

시 보

1973.5.29 17-11

별지 제 5 호 서식

업 무 일 치

취급자	지방 행정 주사 보	관장	결재

일 자 요 일 일 기

지구 분 설	현	황	업 무 내 용
합 축 실	1. 총 수	명	
	2. 퇴소자	명	
	3. 신입조자	명	
	4. 재숙자	명	
	사용료징수	원	
식 당	1. 총 수	기	
	2. 조식	기	
	3. 석식	기	
	사용료징수	원	
이 발 소	1. 총 수	명	
	2. 대인	명	
	3. 소인	명	
	사용료징수	원	
목 욕 탕	총 수	명	
	사용료징수	원	
비 고	1. 이용자총수	명	
	2. 사용료징수총액	원	
	기 타		

1671.

102

훈령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67 호

서울특별시 시세파장기판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3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시세파장기판과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시세파장기판과 과장 담당 공무원(이하 "파장원"이라 한다)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이에 상응한 신상필벌을 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평가사항) ①이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목표액 대 정수실적
2. 부과액 대 정수실적
3. 과년도 체납정리실적
4. 체납액 중 체납처분(체권화보)실적

②전항 각호의 체납액정리 실적평가는 평가기간중의 징수정리명령액에 대한 징수실적비율을 계산하여 징수정리명령액중 결손처분, 감액 및 부과취소액은 징수정리명령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전항의 징수정리명령액은 당해 직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시세 체납액 전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평가및관리) ①시세 징수담당기판별 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세정과장이 평가한다.

1. 수입보고서
2. 시세파장 원보

②파장원의 근무실적은 다음에 대하여 기판별 소속재장이 평가하고 소속과장이 이를 확인한다.

1. 근무실적은 매월 말 계단위로 이를 평가한다
2. 계장은 소속직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빌지 제1호서식의 시세파장평가카드를 작성한다.
3. 과장은 전호의 시세파장 실적

평가카드를 확보하고 당해 직원의 날인을 받아 익월 10일이내 세정과장을 참조로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정원이 10명미만인 계에서는 우수자 1명 하위자 1명 나. 과정원 10명이상인 계에서는 우수자 2명, 하위자 2명 다. 과정원 20명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 1명을 추가한다.

제 4 조 (평가기준) ① 기관 및 과정원의 근무실적 평가기준은 다음에 의 한다.

1. 수입목표에 대한 정수실적비율 100 %를 30 점으로 한다.
2. 부과액에 대한 정수실적비율 100 %를 50 점으로 한다.
3. 과년도 채납액에 대한 정수실적비율 30 %를 10 점으로 한다.
4. 채납시세 중 채납처분(채권확보) 실적비율 50 %를 10 점으로 한다.

제 5 조 (상별) ①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창한다. ② 과정원의 근무실적은 매월 제출된 시세과정평가카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3 월간 계속 우수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을 수여한다.
2. 6 월간 계속 우수자 및 년간 6 월이상 우수자에 대하여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을 수여한다
3. 계속 3 월간 하위자 및 6 월중 3회이상 하위자에 대하여는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징계요구하며 소속청에서 전출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준용) 시세과정종사공무원중 내근 사무정리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17-14 제 373 호

서 울 시

1973.5.29

고 시

및 자 특별회계 제 1회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1973. 5. 25.

197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 울 특. 별 시 장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75,072,124,000 원
일반회계	41,430,186,000 원
특별회계	33,641,938,000 원
주택비	2,174,869,000 원
토지구획정비	5,959,621,000 원
지하철건설사업비	12,560,272,000 원
하수처리장비	504,168,000 원
건설자재생산비	408,651,000 원
유료도로비	348,362,000 원
시민화판비	190,677,000 원
재해구호사업비	62,298,000 원
운수사업비	11,309,812,000 원
수도사업비	10,123,208,000 원

제 373 호

시

보 1973.5.29 17-15

사 경

◎ 1973.5.23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곽경
마포구 근무를 명함.

경기도김포군 지방농림기원 정용직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원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 1973.5.24.

경기도양양군 농림기사보 박송돈
산업과 농림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산림청임정국 이용파 농림기사보 강화종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녹지파 근무를 명함.

자동차정비창 지방기계기좌(정비과장) 심형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자적기사보 조규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김영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이원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전영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이동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북부녹지 사업소 지방농림기원보 최승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구획정리 제 1과 지방토목기원 이상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2.

23 (발령제 182 호) 감봉 1월을
동일자로 변경 견책에 처함.

수회 정리 제 2 파	지방토목기원	김성정	박화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2. 23 (발령제 182호) 감봉 6월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3월에 처함.			지방행정사무판 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지방간호기사보 김조자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시정개발 담당관실 제 5 개발 담당에 보함. 1973.5.25
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 김영규 청소제 2 파 근무를 명함.			충청북도 지방행정주사보 고아승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청소제 2 파 지방기계기사 주재형 서부위생처리장 파견근무를 해제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청소제 2 파 지방건축기사보 김창희 영선파 파견근무를 명함.			충청남도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성열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시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아파트관리파 지방건축기원 영선파 파견근무를 명함.	이장규		◎ 1973.5.26.
자동차 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 73.7.31까지 자동차정비창 파견근무를 명함.	목영우		서대문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태경발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3.3.27 (발령 제 265) 징계처분 (경책) 을 동일자로 취소함.
동원파 지방행정사무판 (동원제장) 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한광환		

제 373 호

시 보

1973.5.29 17-17

전 설 부 행정주사보	권 우 택	6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도시가스 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양홍준
2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 제 1파 지방행정주사보 지원국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제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경기도인천시	지방행정주사보	장 경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서 울 특 별 시 장